

中 세무조사 강풍, 이렇게 대응하라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최근 현황 / 5

- | | |
|---|--------------------|
| 5 | 1. 개요 |
| 7 | 2.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애로 |

II. 세무조사 / 9

- | | |
|----|---------------|
| 9 | 1. 조사대상 선정 |
| 10 | 2. 중점조사대상 |
| 11 | 3. 세무조사 종류 |
| 15 | 4. 세무조사관련 리스크 |

III. 기업의 세무관리 문제점 및 대응방안 / 18

- | | |
|----|-----------------|
| 18 | 1. 기업의 세무관리 문제점 |
| 20 | 2. 대응방안 |

부 록 : 세무조사 관련 최근 법령

- | | |
|----|-----------------------------|
| 24 | 1. 비거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조사 |
| 25 | 2. 세금징수 강화 및 세수수입 증대에 대한 조치 |
| 26 | 3. 2009년 세무조사 관련 통보 |

요 약

□ 최근 현황

- 중국현지 활동 회계법인들과 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일정 규모이상 외자기업(外資企業)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증치세(增值稅), 영업세, 개인소득세, 관세에 대한 자진수정신고 및 납부 요구와 이전가격조사를 포함한 중국 당국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재정자금을 쏟아 붓고 있으나, 반면에 재정수입의 근간인 조세수입은 6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6% 감소하는 등 재정수입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재정압박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최근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강화는 단기간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회수와 조사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이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지역의 건설자금 수요와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구축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양로보험, 무상교육지원확대 등 각종 사회부조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연적이기 때문임.

□ 세무조사

- 조사대상 선정
- 세무조사 대상은 과세당국에서 1)전산 납세자선정 분석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거나, 2) 조사계획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일정비율 또는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으며, 3) 일반인의 제보나 관련 부서에서 세무부서로 이첩하는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

○ 중점조사대상

- 관련 회사 간에 이전가격거래를 통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자기업, 최근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기업(납부세액 0신고 기업 등), 최근 3년 내 세무조사 미 실시 기업, 부정 또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수출관련 증치세 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등이 중점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세무조사관련 리스크

- 기업소득세 : 자진수정신고납부 후 재조사, 추정소득에 대한 과세, 매입증치세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내용의 부적절, 감가상각 부적절 등
- 증치세(부가가치세) : 세무국이나 세관의 (가공무역)검사 및 말소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와, 수출시 증치세액 환급 부적절 등
- 영업세 : 해외용역제공 및 해외송금, 수입설비 기술지원 등에 대한 영업세 미징수, 각종 용역과 관련한 원천징수 여부

□ 기업의 세무관리

- 진출기업의 세무관리상 문제점으로는 기업내 조세 전문인력의 부족, 지나친 현지 당국과의 판시(관계) 의존, 기업내 체계적 조세관리시스템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기업은 주기적으로 기업 내부의 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세무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해소하여야 함. 또한, 자기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자기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무관리상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검토리스트를 갖추어야 함
-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동향 파악 및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즉, 피동적으로 세무정책이 발표된 후에 대처방법을 찾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세무당국의 동향 및 입법동향을

파악한 후 미리 이에 맞게 기업정책 및 실무를 수정 변경하여야함(이 경우 판시 활용 중요).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세무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 단기적으로는 ①기업소득세 신고시(신고기한 5월31일) 어렵더라도 약간의 납부실적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관계 회사와의 거래금액이 큰 기업 특히, 로열티거래 및 서비스사용료 지급금액이 큰 기업의 경우 신고서의 첨부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③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자료를 준비해야함.
- 중점납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최근 몇 년간 적자로 인한 세금납부 실적이 적은 기업은 기업소득세 이외 증치세, 영업세, 관세, 인지세, 원천징수 위주로 기업자체 세무리스크를 점검하고 조사에 대비하여야 함.

I. 최근 현황

1. 개요

중국현지 활동 회계법인들과 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일정 규모이상¹⁾ 외자기업(外資企業)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증치세(增值稅)²⁾, 영업세, 개인소득세, 관세에 대한 자진수정신고 및 납부 요구와 이전가격조사를 포함한 중국당국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³⁾ 이러한 상황은 금년에 그치지 않고 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외자기업의 세무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임.

‘09년 8월 초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이 금년 초에 이어 다시 한 번 산하 지방세무국들에게 금년도 세수목표를 반드시 달성토록 지시한 것과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증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이를 보여주고 있음.⁴⁾

이러한 자진신고 및 세무조사 강화는 주로 재정지출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부진으로 재정수입 특히 세수입이 원활치 못한데 따른 것임.

중국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재정자금을 쏟아 붓고 있으나, 반면에 재정수입의 근간인 조세수입은 6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6% 감소하는 등 재정수입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표1 참조)

재정지출면에서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주요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4조 위안(한화 약 700~800조원)을 투입키로 하였으며, 부진한 대외무역수요를 만회하기 위해 내수소비 진작책으로 자동차 구매세 인하 등 세제 감면 폭 확대, 농촌의 가전 및 자동차 구입에 대한 소비보조금 지급, 수출 장려를 위한 수출시 증치세의 환급율 인상 등으로 인해 지출이 급증하였음.

1) 일정 규모이상 : 일반적으로 판매액 기준 500만위안 이상 기업을 지칭

2)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해당

3) 현지 관계인사에 따르면 국가 세무조사기관의 금년도 세무조사 추정 수입임무는 1,000억 위안으로 2008년도 (513억 위안)대비 2배에 가깝다고 함. (www.globalwindow.org 2009.8.17 “중,세무조사 전방위 강화 움직임”)

4) 중국세무공무원 총인원은 한국전체공무원 숫자와 거의 비슷한 100 만 명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표1) 중국의 조세 수입 현황 (2009년 상반기)

세금유형	조세수입 (억 위안)	동기대비 증가액	증감율(%)
세수총액	29,530	-1,896	-6.0
· 국내증치세	9,202	-283	-3.0
· 국내소비세	2,196	850	63.1
· 수입증치세 및 소비세	3,374	-590	-14.9
· 관세	657	-280	-29.9
· 대외무역기업 증치세환급	-3,514	-632	21.9
· 영업세	309	259	6.4
· 기업소득세	6,820	-1,092	-13.8
· 개인소득세	2,152	15	0.7
· 증권거래인지세	213	-624	-74.5
· 부동산세	426	73	20.7
· 차량구매세	516	-34	-6.2
· 도시지역(城鎮)토지사용세	503	75	17.6
· 토지증치세	319	28	9.8
· 농경지점용세	323	186	135.0
· 자원세	180	7	3.8
· 계약세	799	63	8.5
(상기 조세수입 합계)	(28,474)	(-1,978)	(-6.5)

자료원 : 2009年上半年稅收收入的結構性分析 (稅政司 2009.7)자료 (표2)

반면에 재정수입의 근간인 세수의 경우 기업경영의 악화(공업기업이윤율 지속 감소)에 따른 기업소득세 대폭감소, 대외수입액의 급감에 따른 관세, 수입증치세 및 소비세 대폭감소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음.

이러한 재정압박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최근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강화는 단기간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회수와 조사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이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지역의 건설자금 수요와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구축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양로보험, 무상교육지원확대 등 각종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연적이기 때문임.

2.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애로

세수확보정책과 세무조사를 현장에서 접하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회계 전문가들이나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국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관련 겪고 있는(느끼는) 애로사항은 아래와 같음.

1)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방식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세무공무원이 목표세액을 제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세수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기업입장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⁵⁾

2) 세무조사 실무집행시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

중국의 광대한 규모와 방대한 기업수를 고려하면 당연한 이야기 일 수 있으나, 기업이 대도시에 있느냐 소도시에 있느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존에 세금납부실적이 많은가 적은가 등등 요소에 따라 기업이 처하게 되는 세무환경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음.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차가 적지 않음. 국내외대기업이 많이 위치한 대도시에서는 조사가 대기업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도시에서는 소기업도 조사대상에 종종 선정되기도 하며, 이로 인한 추정실적도 큼. 특히 장수(江蘇) 및 광둥(廣東)의 일부 2선 도시에서는 조사강도와 추정실적이 기타 지방에 비하여 훨씬 강한 편임.

3) 내국세, 관세 등 자진수정신고납부의 애매함과 어려움

자진수정신고납부(자가검사)는 2009년 들어 중국과세당국이 세수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중국식 세무제도임. 중국실무자들은 통상 자가검사 후 세금납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반(半)세무조사에 가깝다고 토로하는 기업들이 많음.

5)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중국과세당국은 174건의 이전가격조사를 시작하여 그중 152건을 종결 하였으며, 추정 금액이 7.5억 위안에 달하였음. 그중 선전세무국이 4.2억 위안으로 현재까지 최고 금액을 기록함.(중국소재 관련 회계법인 세미나 자료)

중국과세당국이 보내는 통지서를 보면 기업 스스로 자기업의 세무문제를 노출시키고 자진수정신고납부를 하라고 통지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 시 향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임. 더욱이 어느 정도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애매함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음.

II. 세무조사

1. 조사대상 선정

세무조사대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 전산 납세자선정 분석시스템을 통한 선정

세무기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납세신고서,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소득세 연도정산표, 세부담율, 영업이익율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업종과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전산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납세조사자 명단을 확정지음.

2) 조사계획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일정비율 선정 또는 무작위 선정

최근의 조사는 일정(영업)규모이상,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 위주로 조사계획이 작성되고 해당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경우 세부담능력(담세력)이 있는 대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이 선정되었고, 그 이후 기업규모별로 점차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음⁶⁾

3) 시민제보, 관련부서에서 이첩 등에 의한 선정

세무조사기관은 세무 관련 사건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음. 시민제보는 서면 또는 구두제보 모두 가능함.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받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근무 직원(또는 퇴직직원)의 제보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음.

6) 중국과세당국은 은행, 보험, 전력, 통신, 석유화학공업 등 5대 업종의 60개 대형기업그룹과 지사가 세수 자가검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형기업그룹 세수 자가검사에 관한 통지(09.4.14)'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미 지난 7월 20일까지 이 업무는 완성되었음. 국가세무총국은 향후 몇 개 기업을 뽑아 전면적 세수검열에 나설 예정임.이 밖에도 국세총국 대기업세수관리사는 별도로 45개 대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 자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가운데 31곳은 대형국유기업, 4곳은 민영기업, 10곳은 외자기업임. · 10개 외자기업은 노키아, 삼성, 모토로라, 파나소닉, 지멘스, 맥도날드, HSBC, GE, 월마트, Foxconn으로 한국기업은 삼성이 포함됨.(www.globalwindow.org 2009.8.17 "중,세무조사 전방위 강화 움직임")

2. 중점조사대상

과세당국은 중국내 상당수 외자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⁷⁾와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초 특별납세조정 규정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하고(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的通知 国税发[2009] 2号 2009.01.08) 탈세에 대하여 엄격히 대응할 것임을 명시하였음.

외자기업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상기 통지문은 로열티, 서비스 사용료를 주요 조사항목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주재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문제도 주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상기 통지문(규정)에 특별히 언급된 중점조사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음

- 1) 관련 회사 간에 이전가격거래를 통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자기업
- 2) 최근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기업(납부세액 0신고 기업 등)
- 3) 3년 내 세무조사 미 실시 기업
- 4) 전국형 대형할인매장
- 5) 부정 또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수출관련 증치세 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7)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的通知 国税发[2009]2号('09.1.8)의 제 9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란 아래와 같은 관계자를 의미함. ①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 지분의 2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 지분의 25%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② 기업과 다른 기업 간의 대차자금이 자본금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기업의 대차자금 총액의 10%이상을 다른 기업에서 보증한 경우 ③ 기업의 이사 또는 총경리 등 고위관리자의 절반 이상 또는 1인 이상의 상임이사가 다른 기업에서 파견된 경우 ④ 반수이상의 고위경영인원이 타방의 고위관리인원을 겸임하거나, 적어도 1명이 일방의 이사회를 통제하는 고위관리인원이면서 타방의 이사회 고위관리인원을 겸임하는 경우 ⑤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이 반드시 다른 기업에서 특허권(산업재산권, 독점기술 등을 포함)을 제공해야만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⑥ 기업의 구매 또는 판매활동을 주로 다른 기업이 통제하는 경우 ⑦ 일방이 주로 타방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접수하는 경우 ⑧ 기업의 생산경영 거래에 대해 25%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통제하거나 또는 이익상 관련이 있는 기타의 관계(가족, 친척관계 등을 포함)

3. 세무조사 종류

1) 일반조사

국세정기조사(매 3년), 세관조사(수시로 이루어지며, 관세평가 등에 있어 자유재량권이 매우 큼)

2) 특별사안조사

특별사안 별 조사방식으로 2009년 중점 조사대상기업은 대기업 및 호황업종 위주임.(*중국 내자 중소기업은 조사자제), 최근의 자진수정신고(자가검사) 통지는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및 세관총국(海關總署)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전가격조사의 경우 최소 부과금액이 1.5백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2009년 기준)

3) 관세조사

대부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추가 세금부담이 큰 상황임.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관세조사의 경우에 추가 부과액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과액 규모도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많은 편임(최소 한화 수천만원에서 수십 억원까지)

4) 이전가격조사

세무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자(외국)기업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세무조사 중 대처가 가장 어려우면서, 과세가 되는 경우 기업에게 타격이 가장 큰 분야가 이전가격조사 분야임. 중국관련 법규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전가격 세무조사대상 및 중점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점조사대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금액이 큰 기업으로써, 기업의 이익수준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리스크(부담해야하는 기능(역할))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기업들

조사 중점으로 보고 있음. 조세피난처 소재기업과 특수관계자 거래를 가진 기업은 향후 이전가격조사의 중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실질적으로 세무부담이 동일하긴 하지만 중국내에 소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조사중점이 아님.(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的通知 国税发[2009]2号 '09.01.08의 29,30조)

상기 규정 제29조의 7가지 기준⁸⁾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전가격조사대상에 속하게 되지만, 단기적으로 세무부서는 아래 기업들을 중점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사해당 기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
- 과소이익 또는 결손이 발생한 기업
- 조세피난처 소재 기업과 빈번한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 기업

그중에서도 적은 이익 또는 결손이 발생하지만 해외 특수 관계자에게 과도한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중점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단순기능을 가진 기업(진료가공 및 래료가공 업체⁹⁾)은 일정 이익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중점기업에 해당되고 있음. 단순기능을 가진 기업은 기업의 기능(경영)리스크와 일치한 이익을 창출하여야 하는바, 이익수준은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지 말아야 함.¹⁰⁾ 또한 단순기능을 가진 기업이 결손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모기준에 따른

8)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的通知 国税发[2009]2号 '09.01.08 제29,30조에 따르면 이전가격 중점 조사 대상기업은 ① 관련 교역액이 크거나 교역종류가 비교적 많은 기업 ② 장기간 결손, 적은 이익 또는 갑작스런 이익을 본 기업 ③ 동종 업종의 (평균)이윤 보다 (그 이윤이) 낮은 기업 ④ 이윤수준과 부담하는 기능의 위험(성)이 뚜렷이 부합되지 않는 기업 ⑤ 조세피난처의 연관기업과 업무왕래를 하는 기업 ⑥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기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기업 ⑦ 기타 독립교역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기업(이상 상기규정 제29조), 실질적인 세무부담이 서로 같은 중국내 관련기업간의 교역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전체세수수입의 감소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전가격조사 또는 조정을 하지 않음.(이상 상기 규정 제 30 조)

9) 진료가공(進料加工) : 관련 등기수책(가공무역관리부)의 세관관리를 통하여 보세상태로 가공무역이 이루어지며 환거래가 수반됨. 래료가공(來料加工) : 임가공. 가공임 베이스로 이루어지며 무환거래.

10) 내료가공의 경우 가공기업은 완제품에 대한 마케팅 이익이 있을 수 없고(마케팅책임은 위탁 기업에게 있으므로) 임가공임이 이익의 대부분이므로 기업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결손이 나기 어렵다는 것이 세무국의 입장인 경우가 많음.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와 상관없이 2010년 6월까지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함.

중국내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조정원칙은 조사대상기업의 실제 세무 부담이 특수관계자 거래기업보다 낮지 않을 경우, 조정하지 않음. 그러나 조사대상기업의 실제 세무부담이 특수관계자 거래기업보다 낮을 경우에는 조사대상기업은 세율차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함. '실제 세무 부담'이라 함은 실제 납부한 기업소득세(세금감면, 결손 및 재정반환금 등 상황 감안)와 과세소득의 비율을 지칭함.

▶ 유의사항

• 비공개정보의 사용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호 협상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세당국은 원칙적으로 공개정보를 사용하지만, 공개정보를 찾지 못한다거나 또는 공개정보로써는 조사대상기업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의 비공개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 운영자본의 조정

기존의 조사사례 중 많은 기업들이 운영자본(working capital)을 조정하여 이익수준(profit levels)을 낮추려고 시도하였었으나, 원칙적으로 기업의 운영자본을 통한 이익수준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확실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

• 이익수준 산정시 동종업종의 중간치(Median)범위 이상으로 이익을 조정함

기존의 이전가격 조사경험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기업들의 다년간 이익수준은 일반적으로 동종업종의 중간치(Median)범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의 이익수준이 중간치 범위 이하일 경우, 원칙상 중간치 범위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은 기존 수년간의 이익수준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

이전가격조사과정 (TP Audit Process)



Page 35

4. 세무조사관련 리스크

회계세무 전문가들이 중국진출 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세무상 위험들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기업소득세

- 자진수정신고납부 후에도 그것으로 사안이 종결되지 않고, 신고 내용과 납부액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경우
- 세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외지급 수수료에 대해 (손비처리) 인정치 않는 경우
- 지주회사 등에 지급한 용역비에 대한 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용이 불분명함을 문제로 제기하는 경우.
- 자가(생산)제품 및 외부구입 제품에 근거하여 기업의 소득을 추정(간주소득 문제)
- 첨단신기술(高新技術)에 따른 세제혜택 신청 요건의 부적정한 통과
- 자산처분 손실처리 부적절, 간주소득 미계상 ('09년 들어 수정신고를 요청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각 지방별로 요청내용의 차이가 있음)
- 매입증치세(매입부가가치세) 공제내용의 부적절
- 감가상각 부적절, 부적정한 세금계산서
- 일반 관리비의 비용(손금)불인정, 재고자산평가 부적절, 복리후생비 계상 부적절
- 원천징수액 부적절, 이전가격 책정의 부적절 및 포괄적 부당행위로 인한 납세감소분을 추정하여 세금추징
- 이전가격세무조사(과다한 소득이전 시 주의 필요, 업종별 평균이익율 이하기업이 중점 조사대상이 됨), 로열티 지급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거의 예외 없이 조사

2) 증치세(부가가치세)

- 세무국핵소(核銷:검사 및 말소), 간주판매, 매입세액과다공제(생산이외사용 - 복지 등)
- 관세핵소(核銷:검사 및 말소)이후 추가납부 증치세에 대한 적절한 원인규명없는 임의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과다공제(비정산손실, 원인불투명),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
- 면세도입설비, 금형의 외주임대 등
- 증치세 환급세액 부적정

3) 영업세

- 해외기계도입, 설비금형 등 무상임대 분야
- 해외용역제공 및 해외송금
- 수입설비 기술지원 등에 대한 영업세 미징수
- 각종 용역과 관련한 원천징수 여부

4) 소비세, 관세, 개인소득세(주재원),인지세

- 세관핵소(核銷:검사 및 말소)후 세관장부와 실제 재고차이에 따른 관세, 증치세 추징
- 보세(保稅)자재와 비(非)보세자재를 분리하여 다루어야 하지만, 물류흐름, 관리 시스템 상에서 미분리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추징문제.(세관조사 후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바 상당한 주의를 요함. 관련 비납세 부분을 밀수 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세관 조사원의 자유재량권이 상당히 큰 바 주의 요망)
- 복리후생비 및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범하는 오류 등
- 주재원 관리규정미비, 인지세 고액부과

5) 기타 외환거래 검사 및 말소 관련

- 외환 관리를 부적절 하게 할 경우 자금을 밀반입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주의를 요함.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고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III. 기업의 세무관리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기업의 세무관리 문제점

1) 기업내 조세 전문인력의 부족

중국내 외자기업자체에 현지 세무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중국세무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본사파견인원이 극소수임. 중국내 세무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이를 현지 직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중국인 직원 중에도 중국세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업무에 임하는 직원은 일부 대기업의 중국인 직원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현지 회계법인의 의견)

사실상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문제를 키우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세무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업설립 3년 전후로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이 몇 년간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2) 지나친 판시(관계) 의존 및 오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관계자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관련 기관 또는 인맥과의 관계망(소위 판시)구축에 관한 것임. 사실상 현지 진출기업이 현지 기관이나 중국인과 맺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판시)는 중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수준임.

예를들면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컨설팅기업들이 관계(판시)의 정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5단계는 최고의 단계를 의미), 이들에 따르면 현지 진출기업이 중국인들과 구축하고 있는 관계는 거의 대부분 2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임.

이러한 관계망만으론 점점 더 시스템화되고 있는 중국의 세무관리 환경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특히 이전가격세무조사의 경우 중국세무당국의 다단계에 걸친 관리와 통제가 있어, 지엽적인 관계(일부에 국한된 관계)로 문제를 처리하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됨.

세무문제에 있어 관계망(판시) 활용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먼저 기업 자체적으로 최상의 논리와 증빙을 갖추어 놓은 뒤에, 관련 기관의 핵심 관계자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함.

3) 기업내 체계적 조세관리시스템 부재

중국정부가 세무관리에 있어 외자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정책에서 외자기업을 중국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음.

현지 진출기업이 갖추어야할 체계적인 조세관리시스템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무문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놓는 것을 의미함. 중국진출기업이 사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었다라면 피할 수 있었던 세금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대응방안

1) 기본적 준비사항

기업은 주기적으로 기업 내부의 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세무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해소하여야 함. 또한, 자기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자기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무관리상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검토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함

① 기업소득세

- 자진수정신고여부 내지 세무조사 후 납부여부 검토
- 기업 자체의 점검목록(Check list)에 따른 기업내부통제
- 각종 세금계산서의 철저한 관리(부정행위방지 및 조세리스크 감소)
- 외국본사의 중요 납세사항 주기적 점검
- 본사 및 관계 회사 간의 거래자료 보완, 특히 계약서 주의
- 각종 비용항목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세무국 인정(가능)여부 사전검토

② 증치세

- 기업 자체의 점검목록(Check list) 및 계약서 등 보완
- 증치세 환급신청, 매입세액공제 적정성 등 주요사항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자료보완
- 기업 증치세 관리프로그램 수정
- 세무국 검사 및 말소(核銷)시 전문가와 내부인력협조

③ 영업세

- 기업 자체의 점검목록(Check list)및 계약서 보완
- 중요계약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무문제 점검
- 해외거래용역 전반에 대한 재검토

④ 관세

- 수책(가공무역관리 수책 등) 등 관리시스템 구축내지 보완
- 관세핵소(核銷 : 검사 및 말소)에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핵소시 차이 최소화를 위한 기업내부의 노력 필요
- 관리자의 점검리스트 준비 및 보고의 체계화(보고서식의 통일화)

이러한 기본적인 대응(준비)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동향 파악 및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즉, 피동적으로 세무정책이 발표된 후에 대처방법을 찾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세무당국의 동향 및 입법동향을 파악한 후 미리 이에 맞게 기업정책 및 실무를 수정 변경하여야함.(이 경우 판시 활용 중요)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세무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2) 대응전략

중국의 세무전문가들이 제시한 진출기업의 단기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① 기업소득세 신고시(신고기한 5월31일) 어렵더라도 약간의 납부실적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¹¹⁾

자진수정신고 통지를 받은 기업도 최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선 적정한 금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임¹²⁾.

- 11) 중국과세당국은 업종별로 최저 세부담율을 비공식적으로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최저 세부담율이 세무조사선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12) 자진수정신고와 관련 많은 기업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대체 얼마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는가” “어떤 항목을 신고하여야 하는가”임. 기업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전문가들 역시 ① 우선 자진수정신고납부 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②그 금액은 자진수정신고납부 통지를 받은 기업의 납부현황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못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입장에서 수정 신고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향후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임. 즉, **일회 수정신고 납부로 종결될 수 있도록 신고항목 선정하여야 함.** 기업의 사업모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깊은 생각 없이 수정신고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할당된 세수목표를 달성한 세무국은 거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진수정신고 납부실적도 당초 중국과세당국의 예상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기업은 기업 스스로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자체 세무위험을 정기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어야 함.

② 관계 회사와의 거래금액이 큰 기업 특히, 로열티거래 및 서비스사용료 지급금액이 큰 기업의 경우 신고서 첨부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¹³⁾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로열티거래 등 각종 명목으로 해외송금이 많은 기업이 세무당국의 주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거래 정당성에 대한 입증논리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함.

③ 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은 자체적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자료를 준비해야함.

일차적으로 중점납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최근 몇 년간 적자로 인해 세금납부실적이 적은 기업은 기업소득세 이외 증치세, 영업세, 관세, 인지세, 원천징수 위주로 기업자체 세무리스크를 점검하고 조사에 대비하여야 함.

비록 투자 후 이익발생시점부터 기업소득세 2년 면세 3년 50%감세(2免3半)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일지라도, 중국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시 세무상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기업이 생각하는 경우와 달리 세금납부시점이 달라져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감면기간 중에는 기업소득세 외의 기타 간접세에서 추징세액이 많아져 기업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도 준비하여야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함.

① 세무위험에 대한 주기적 사전점검 및 자료준비

세무조사는 최소 3년 이상을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조사개시가 될 경우 충분한 준비가 어려움. 특히, 이전가격거래조사 시 거래의 정당성 입증은 사전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사후에 준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상의 여유가 많지 않아 준비하더라도 충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음.

세무조사 주요 대상인 대기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자체 및 외부진단을 실시하여, 진단에 따른 세무검토리스크를 보유하여 기업을 관리해야함. 즉, 시스템화 된 관리가 필요 함.

13) 금년도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중국과세당국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라고 함.

② 기업내 본사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 필요

중국내 세무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세무실무경력을 축적한 인력이 중국 내에 진출하기 전에 세무관련 사전학습과 중국 내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중국어 학습이 선행되어야 함. 세무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국에서 학습과 업무가 병행되어야 함

기업입장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최선의 방어전략은 세무상 약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세무당국을 상대하여야 함. 이렇게 하려면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파악해야함. 적어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의도를 일부라도 간파하고 있다면 일방적인 과세를 당하지는 않을 것임.

부록 : 세무조사 관련 최근 법령

1. 비거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조사

국가세무총국은 2009년 7월 2일에 관련 문건(關於調查境外机构通過派遣人員爲境內企業提供服務征收企業所得稅情況的函際便函[2009]103号)을 발표하여, 파견 직원을 통하여 중국소재 기업에 관리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취득하는 비거주기업의 소득세 납부상황에 관한 조사를 진행.

* 조사대상업무

국외기구와 중국내 기업이 직원파견계약 또는 기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인원이 중국내 기업에서 임원, 기술인원 및 기타 직무를 담당하고 중국내기업이 국외기구에 파견비 또는 기타 관련비용을 지급.

* 조사대상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 자동차 제조기업도 조사 진행 대상.

* 조사결과 처리

조사결과 비거주자기업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 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국가세무총국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 징수하고 체납금과 벌금을 부과함.

기업소득세 징수시 비거주자기업이 정확한 원가비용, 장부, 증빙 등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예정이익비율을 적용하여 과세 할 수 있음.

* 보고기간

각 지역의 세무국은 '09.8.31전 본건 조사를 시작하여,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에 세금, 체납금, 벌금 추정상황 및 구체 사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2. 세금징수 강화 및 세수수입 증대에 대한 조치

국가세무총국은 <세수징수관리 강화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进一步加强税收征管若干具体措施》的通知国税发[2009] 114号2009.7.27)를 발표하고, 세법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세금징수 및 세수 목표 달성 지시.

본 조치에서는 20개 항목에 대해 세법 규정에 따라 세수수입의 유실을 방지하고 세금징수단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여기에는 최근에 발표된 감사보고서 조사 결과 및 이전가격 강화 규정 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과 관련이 높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소비세 과세표준 관리 강화 : 유통단계에 특수 관계자를 끼워 넣는 행위 방지
- 2) 타 지역에 분공사(分公司)가 설립된 경우 기업소득세 확정신고/예납 관리 강화
- 3) 기업소득세 비용(손금)산입항목 관리강화(생산수율이 동종 업체 대비 낮은 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및 자산손실의 손금산입절차 조사)
- 4) 수입금액 확정에 대한 관리(비화폐성 매출대금의 인식문제, 기업소득세와 증치세 신고 상의 수입금액 차이분석 강화)
- 5) 지분양도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조세조약을 악용한 사례 조사)
- 6) 중국(대륙)외 상장기업의 실질성 파악 : 세법상 중국거주기업인지 여부 검토
- 7) 탈세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 장기 저이익기업이면서 경영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 이전가격조사 강화, 과소자본 및 가짜 임가공(래료가공)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호텔업종의 해외 지급 수수료 조사 강화, 단순한 기능과 리스크를 부담하는 외자기업이 외국관계사의 결손을 부담하는 행위 방지 등
- 8) 건축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 : 부동산 개발, 판매, 보유 단계에 대한 세금징수 강화
- 9)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세법과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납세의무 확정
- 10) 외국기업에 대한 특정항목검사 진행 : 도급공정업체, 배당금/이자 수취 업체, 지분양도업체에 대한 조사 강화
- 11) 대기업에 대한 검사 강화 : 자진수정신고와 샘플링검사 실시

3. 2009년 세무조사 관련 통보(国税发[2009]9号 国家税务总局关于开展2009年税收专项检查工作的通知)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방의 세무국이 국가세무총국에서 요구하는 조사항목을 완성한 후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소재지에서 선별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함.

- 세무조사기간 : 2009.3월~9월
- 조사대상연도 : 2007, 2008 2개 사업연도
- 세무조사의 중점 조사대상 : 대형슈퍼마켓 및 TV홈쇼핑기업, 건축업, 수출시의 증치세 환급/면세업무관련 중점 기업 등.
- 선별적인 세무조사항목 : 비거주자기업, 영리성 의료 및 교육업, 중개업체, 브랜드 도소매상, 경매기업 및 3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중점납세기업.

이외 각지 세무기관은 연간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납세신고상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야 함.

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09-003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2009.2
09-004	美 경기부양법인 분석 및 활용전략	2009.2
09-005	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	2009.3
09-006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2009.4
09-007	2009 美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009.4
09-008	미·중·일 그린뉴딜 정책	2009.4
09-009	금융위기속 CIS 진출 기업 및 바이어 동향	2009.4
09-010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아프리카 - 중국, 일본, 인도의 진출현황 및 시사점 -	2009.4
09-011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현지진출전략 변화와 시사점	2009.5
09-012	인도 신정부의 경제통상방향과 전망	2009.6
09-01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동향	2009.8
09-014	미 행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와 미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2009.9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2009.2
09-002	중동의 5대 비즈니스 유망 분야	2009.2
09-003	한-호주, 뉴질랜드 BT산업 협력방안	2009.3
09-004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 인증제도	2009.3
09-005	불황기 중국시장, 소비트렌드를 읽어라	2009.3
09-006	일본 소비재 유망상품 및 수출방안	2009.3
09-007	새롭게 주목받는 美 흑인시장	2009.3
09-008	아프리카 전력시장 ON - 전력산업 현황과 진출 방안	2009.3
09-009	중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 2,3선 도시 소비 포인트	2009.3
09-010	세계 전자산업 및 시장의 재편과 우리기업에의 기회	2009.4
09-011	동남아 CDM 시장현황과 기회	2009.4
09-012	중동에 펼쳐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 그린산업현황과 기회	2009.4
09-013	해외 LED 5大 시장 진출전략	2009.5
09-014	인도 소매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9.5
09-015	미국의 쿠바 제재조치 완화와 한-쿠바 교역	2009.5
09-016	아세안 휩쓰는 '경제한류'	2009.5
09-017	자동차 부품의 틈새시장, 중동·북아프리카를 가다	2009.5
09-018	미국 新성장 전자부품 시장동향	2009.5
09-019	세계시장을 누비는 한국의 강소제품들	2009.7
09-020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인터넷 홍보 핵심 포인트	2009.7
09-021	중남미 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	2009.7
09-022	동남아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따른 한국기업 참여 기회	2009.7
09-023	한국 제품의 중국내 브랜드 인지도 이렇게 높여라	2009.7
09-023	한국 제품의 중국내 브랜드 인지도 이렇게 높여라	2009.7
09-024	자동차 부품의 틈새시장, CIS를 가다	2009.7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25	중동은 이런 의료기기를 원한다	2009.7
09-026	글로벌기업을 누른 신흥시장 토종기업의 성공 전략	2009.7
09-027	한-EU FTA 수출유망품목 및 활용방안	2009.7
09-028	한-인도 CEPA 이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9.8
09-029	해외 주요국 자전거 산업정책 및 시장동향	2009.8
09-030	중동, 북아프리카 시장 한중일 수출품목 경쟁 동향	2009.8
09-031	동남아 전력 기자재 시장현황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09.8
09-032	심층분석, 러시아의 인증제도 - 새로 도입되는 인증제도와 향후 전망	2009.9
09-033	2009 중국 Grand Survey - 중국투자기업 경영성과 평가 및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2009.9
09-034	홍콩 문화시장, 제대로 알고 들어가자 - 게임, 캐릭터, 라이선싱 -	2009.9

●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글로벌 수출시장의 5대 트렌드	2009.1
09-002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2009.2
09-003	동유럽 금융위기와 진출기업 동향	2009.3
09-004	경기침체기 글로벌 기업의 구매정책 변화	2009.3
09-005	세계 유명기업의 그린마케팅	2009.3
09-006	원화약세에 따른 대중수출 영향 및 전망	2009.3
09-007	중동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시장동향 및 시사점	2009.4
09-008	美 크라이슬러 파산보호신청과 국내업체 영향	2009.5
09-009	해외시장에서의 한일 수출품목 경쟁동향	2009.5
09-010	동유럽 금융위기 이후 현지시장 점검	2009.6
09-011	미 GM 파산보호신청과 국내업체영향	2009.6
09-012	영국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점검	2009.6
09-013	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녹색기술	2009.6
09-014	'Buy China' 지침의 배경과 영향	2009.6
09-015	중국 내수소비 뜨는 제품 - 화장품, 침구용품,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벽지, 도료, 식품포장기계 -	2009.6
09-016	한-EU FTA 10大 수출유망품목	2009.7
09-017	온두라스 쿠데타와 우리 수출 및 현지진출 기업	2009.7
09-018	2009년 타겟시장, 3중시장 현황과 전망	2009.7
09-019	중국 부동산 시장 어디로?	2009.8
09-020	일본 총선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	2009.8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저보트산업 조사	2009.1
09-004	2009년 지역별 수출유망상품	2009.2
09-005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2009.2
09-006	2009 외국인 투자환경 만족도 조사	2009.3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7	러시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2009.3
09-008	CEO・HR マネージャー向けの主要労働判例集 (2008年改訂版)	2009.3
09-009	중국 내수유통 경영실무 가이드	2009.4
09-010	그린허브코리아 주간 2009 종합결과보고서	2009.5
09-011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유럽편	2009.5
09-012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미주편	2009.5
09-013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아시아편	2009.5
09-014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중동/아프리카/CIS편	2009.5
09-015	해외 주요국 LED 시장동향	2009.5
09-016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09.6
09-017	법령으로보는 중국 노무관리실무가이드	2009.6
09-018	200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8)	2009.6
09-019	200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09.6
09-020	200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9.6
09-021	Post-China 투자진출 유망국 투자여건	2009.7
09-022	주요 선진국 녹색에너지 기술동향	2009.7
09-023	전세계 비철금속 생산현황 및 글로벌소싱 활성화 방안	2009.7
09-024	중국 주요 시장 프랜차이즈산업 상권 분석 및 진출방안	2009.8
09-025	한눈에 들어오는 중국 유통지도 2010	2009.9
09-026	유럽 온라인 유통점 진출 가이드	2009.8
09-027	협력유망 유럽 신재생에너지 기업정보	2009.8
09-028	짜퉁의 진화, 중국 산짜이(山寨)	2009.9
09-029	중국 산짜이 문화의 지재권에 대한 영향	2009.9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09-005	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및 상담회	2009.2
09-006	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핸드북	2009.2
09-007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9.2
09-008	미-중-일 그린 비즈니스를 잡아라	2009.4
09-009	일본기업 부품소재 구매전략 설명회	2009.4
09-010	중국 내수시장을 제대로 뚫기 위한 성공조건과 공략방법	2009.4
09-011	중국 부품소재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2009.6
09-012	미국 자동차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2009.6
09-013	유럽 자동차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아시아 주요 완성차 구매전략	2009.6
09-014	CIS 주요국 시장변화와 진출전략	2009.6
09-015	중국 내수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노무・세무 핵심 포인트	2009.6
09-016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설명회	2009.6
09-017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사업기회	2009.6
09-018	중동 신성장산업 진출 설명회	2009.6

작성자

◆ Ernst & Young 장홍래 회계사
◆ KOTRA 중국사업단 광복선 조사담당관

Global Business Report 09-035

中 세무조사 강풍, 이렇게 대응하라

발 행 인 | 조 환 익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9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